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8. 26 선고 2021나105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8. 26 선고 2021나105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640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변론종결 2021. 7. 1.

판결선고 2021. 8.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6409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00,878원 및 그 중 264,121,846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7. 17. 접수 제2609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솔

별지